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87
------	------

2019. 12. 18.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0월 16일, 한기영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 제1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12.1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한기영 의원)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고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이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실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할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나. 「최저임금법」 제10조에 의해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까지 생활 임금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고시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 매년 생활임금 고지일이 상이함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나. 최저임금법 제10조에 의해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 이내에 생활임금을 결정해야함(안 제7조제1항).

다. 시장은 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함(안 제7조제3항).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생활임금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생활임금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서울시 생활임금제 운영 현황

- 서울시는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가계지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 제도¹⁾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부문에만 제한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또한 당초 목표였던 1만원대의 생활임금이 2019년에 달성된 바,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춰 노동자의 실질적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한편 2020년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10,523원, 월 2,199,307원 (월 소정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으로 최저임금 대비 122.5% 수준임.

〈 연도별 최저임금 대비 생활임금 현황 〉

(단위 : 원)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최저임금	5,580	6,030	6,470	7,530	8,350	8,590
생활임금	6,687	7,145	8,197	9,211	10,148	10,523

1) 생활임금은 2015년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직고용 노동자를 시작으로 2016년 민간위탁 분야, 2017년에는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와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수혜 노동자는 약 1만여 명으로 추산됨.

다. 생활임금위원회의 위원 구성 (안 제5조 제2항 제5호)

- 생활임금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생활임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서울시의원 2명,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생활임금·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음.
- 개정안은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 위원에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노사양측의 균형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 현재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미 당연직위원 외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 개정으로 인한 위원 구성의 변동은 필요하지 않음[참고자료 1].
- 다만 지난 28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통해 조례상의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 바 있어, 조문의 “근로자단체”는 “노동자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라. 생활임금의 결정·고시 (안 제7조)

- 안 제7조는 정부의 최저임금이 고시된 후 45일 이내에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 현재 최저임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활임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참고자료 2].
-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고시일과 생활임금의 의결·고시일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고시 후 생활임금의 결정까지 평균 35.2일이 소요되었음.

〈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의결일 및 고시일 현황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최저 임금	의결일	‘14.6.27	‘15.7.16	‘16.7.16	‘17.7.15	‘18.7.15	‘19.7.12
	고시일	‘14.8.4	‘15.8.5	‘16.8.5	‘17.8.4	‘18.8.3	‘19.8.5
생활 임금	의결일	‘15.2.13	‘15.9.10	‘16.9.27	‘17.8.29	‘18.9.4	‘19.9.4
	책정시기 (고시일)	‘15.2.26	‘15.9.24	‘16.10.20	‘17.9.21	‘18.10.22	‘19.9.26
최저임금 고시 후 생활임금 의결일 차이		-	36일	53일	25일	32일	30일

- 따라서 개정안의 “최저임금의 고시 후 45일까지”의 생활임금 의결 기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평균수준인 35일 내의 기한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한편 서울시의 생활임금액 결정 이후 자치구 또한 자체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안 편성 이전에 생활임금의 의결과 확정 고시가 이뤄져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자,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근로자 단체”를 “노동자 단체”로 수정함(안 제5조 제2항 제5호).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87
----------	---------

제안년월일 : 2019년 12월 18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자,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근로자 단체”를 “노동자 단체”로 수정함(안 제5조제2항제5호).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제5호 중 “근로자 단체”를 “노동자 단체”로 한다.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의한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를 “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으로 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생활임금은 매년”을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 연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5. (생략)</p> <p>③ (생략)</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u>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u></p> <p>② (생략)</p> <p>③ <u>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u></p> <p>1. ~ 3. (생략)</p> <p>④ <u>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u></p>	<p>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u>최저임금법</u>」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의한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u>----- --- <u>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u>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 연도</u> ----- -----.</p>